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27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임춘대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춘선,
신복자, 왕정순, 유정인,
윤기섭, 이민옥, 이상옥,
이성배, 이종환, 황유정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별로 내부위임, 외부위임 및 공공위탁, 민간위탁, 제3자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할 경우에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근거로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위임 및 공공위탁의 근거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종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대행 등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이 종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시장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로 한다.

제3조 중 “위탁사무에”를 “민간위탁 사무에”로 한다.

제4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제3조(적용범위) <u>위탁사무에</u>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u>민간위탁 사무에</u> ----- -----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 및 보고의무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근거법령 관련) 안 제1조의 근거법령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항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것일뿐 개정에 의해 조례해석이 달라지는 내용 변경사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보고의무 관련) 안 제4조의3은 시장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 통상 상임위원회 보고는 의회의 연간 회기일정에 맞춰 진행되므로 별다른 비용수반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